

주주님께

제1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주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.

당사는 상법 제363조, 정관 제21조 및 제23조에 의하여 제11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-- 아 래 ---

1. 일시 : 2018년 3월 23일(금) 오전 9시
2. 장소 :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연구공원 본관 1층
서울대학교 연구공원 웨딩홀
(※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,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.)
3. 회의 목적사항
 - 가. 보고 사항 :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
 - 나. 부의 안건
 - 제1호 의안 : 제11기(2017.1.1~2017.12.31) 재무제표(이익잉여금처분
계산서 포함)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
 - 제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 - 제3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
 - 제3-1호 의안 : 사외이사 오경수 선임의 건
 - 제3-2호 의안 : 사외이사 김영철 선임의 건
 - 제3-3호 의안 : 기타비상무이사 정연훈 선임의 건
 - 제4호 의안 :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
 - 제4-1호 의안 : 감사위원회 위원 오경수 선임의 건
 - 제4-2호 의안 : 감사위원회 위원 김영철 선임의 건
 - 제4-3호 의안 : 감사위원회 위원 김지훈 선임의 건
 - 제5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 - 제6호 의안 :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

4. 경영참고사항 비치

-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였고,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5.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

- 주주님께서서는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, 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6.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

- 직접행사 시 : 신분증
- 대리행사 시 : 위임장(인감날인), 인감증명서, 대리인신분증

별첨 1 : 위임장

별첨 2 :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

2018년 3월 7일

인크로스 주식회사
대표이사 이재원 "직인생략"

■ 별첨 1

위 임 장

[대리참석용]

■ 소 속 :

■ 성 명 :

■ 주민등록번호 :

위 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인크로스(주) 제11기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,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.

■ 소유주식 현황

성 명	주주번호	주 식 수	비 고

주 소 :

성 명 : (주주 인감 날인)

* 첨부 : 주주인감증명서 1부. (대리참석 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)

인크로스(주) 대표이사

귀하

■ 별첨 2 (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)

□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변경전 내용	변경후 내용	변경의 목적
<p>제9조의 2 (주식매수선택권)</p> <p>①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상법 제340조의2를 비롯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<u>이사, 감사</u>를 비롯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다만 상법 제 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이사회 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,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<u>이사,감사</u> 또는 피용자 및 「상법 시행령」 제 30조 제 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,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. 앞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「상법」 제542조의 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. 다만,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(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,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)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</p>	<p>제9조의 2 (주식매수선택권)</p> <p>①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상법 제340조의2를 비롯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<u>이사를</u> 비롯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다만 상법 제 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이사회 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 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,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<u>이사</u> 또는 피용자 및 「상법 시행령」 제 30조 제 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,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. 앞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「상법」 제 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 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. 다만,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(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 사,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)에게는 주식매 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</p>	<p>-상법 제542 조의10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 치</p> <p>-동법 제415 조의2 제1항에 따라 감사 조 항 삭제</p>
<p>제23조 (소집통지 및 공고)</p> <p>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 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<u>이사 또는 감사의 선 입</u>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회후보자 또는 <u>감사후보자의</u> 성명, 약력, 추천인 그밖 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 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23조 (소집통지 및 공고)</p> <p>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 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<u>이사 또는 감사 위원회 위원의 선입</u>에 관한 사항인 경우 에는 <u>이사 후보자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의</u> 성명, 약력, 추천인 그밖 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 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-상법 제542 조의10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 치</p> <p>-동법 제415 조의2 제1항에 따라 감사 조 항을 감사위원 회로 변경</p>
<p>제5장 이사·이사회</p>	<p>제5장 이사·이사회 및 감사위원회</p>	<p>-상법 제542 조의10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 치</p> <p>-동법 제415 조의2 제1항에 따라 제5장 감 사위원회 추가</p>
<p>제39조 (이사의 보고의무)</p> <p>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 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<u>감사</u>에 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39조 (이사의 보고의무)</p> <p>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 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<u>감 사위원회</u>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-상법 제542 조의10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 치</p> <p>-동법 제415</p>

		조의2 제1항에 따라 감사 조항을 감사위원회로 변경
제40조 (이사회 구성과 소집)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의 1주전에 <u>각 이사 및 감사에게</u> 통지하여 소집한다. 단, <u>이사 및 감사 전원의</u>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	제40조 (이사회 구성과 소집)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의 1주전에 <u>각 이사에</u> 통지하여 소집한다. 단, <u>이사 전원의</u>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	-상법 제542조의10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 -동법 제415조의2 제1항에 따라 감사 조항 삭제
제43조 (이사회 의사록)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<u>이사 및 감사</u> 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	제43조 (이사회 의사록)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<u>이사</u> 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	-상법 제542조의10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 -동법 제415조의2 제1항에 따라 감사 조항 삭제
제6장 감사	삭제	-상법 제542조의10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 -동법 제415조의2 제1항에 따라 제6장 감사 삭제
제46조 (감사) ① 본 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.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한다.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4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그러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	제46조 (감사위원회의 구성) ① 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둔다. 단,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3분의 2이상인 되도록 하며, <u>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구성한다.</u> ② <u>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 또는 해임된다.</u> ③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④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⑤ <u>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</u>	-상법 제542조의10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 -동법 제415조의2 제1항에 따라 감사 조항을 감사위원회로 변경

<p>제47조 (감사의 임기) <u>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.</u></p>	<p>원장은 사외이사로 한다.</p> <p>제47조 (감사위원회의 직무) <u>① 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</u> <u>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</u> <u>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</u> <u>④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</u></p>	<p>-상법 제542조의10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 -동법 제415조의2 제1항에 따라 감사 조항을 감사위원회로 변경</p>
<p>제48조 (감사의 보선) <u>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. 그러나 본 정관 제46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	<p>삭제</p>	<p>-상법 제542조의10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 -동법 제415조의2 제1항에 따라 감사 조항 삭제</p>
<p>제49조 (감사의 직무) <u>① 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</u> <u>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</u> <u>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</u> <u>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</u> <u>⑤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(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.)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</u> <u>⑥ 제5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</u> <u>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.</u></p>	<p>삭제</p>	<p>-상법 제542조의10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 -동법 제415조의2 제1항에 따라 감사 조항 삭제</p>
<p>제50조 (감사록의 작성) <u>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삭제</p>	<p>-상법 제542조의10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 -동법 제415조의2 제1항에 따라 감사 조항 삭제</p>

제51조 (감사의 보수와 퇴직금)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.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한다. ③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.	삭제	-상법 제542조의10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 -동법 제415조의2 제1항에 따라 감사 조항 삭제
제7장 계산	제6장 계산	장번호 변경
제52조 (사업년도)	제48조 (사업년도)	조항번호 변경
제53조 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과 비치 등)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(사장)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<u>감사의 감사를</u> 받아야 하며,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③ <u>감사는</u>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(사장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49조 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과 비치 등)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(사장)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<u>감사위원회의 감사를</u> 받아야 하며,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③ <u>감사위원회는</u>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(사장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조항번호 변경 -상법 제542조의10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 -동법 제415조의2 제1항에 따라 감사 조항을 감사위원회로 변경
제54조 (이익잉여금의 처분)	제50조 (이익잉여금의 처분)	조항번호 변경
제55조 (이익배당)	제51조 (이익배당)	조항번호 변경
제55조의 2 (중간배당) 삭제	삭제	조항삭제
제56조 (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)	제52조 (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)	조항번호 변경
제8장 기타	제7장 기타	장번호 변경
제57조 (업무규정)	제53조 (업무규정)	조항번호 변경
제58조 (규정 외 사항)	제54조 (규정 외 사항)	조항번호 변경

□ 이사의 선임

가. 후보자의 성명, 생년월일, 추천인, 최대주주와의 관계, 사외이사후보자 여부

후보자성명	생년월일	사외이사 후보자여부	최대주주와의 관계	추천인
오경수	1970.10.17	사외이사	-	이사회
김영철	1975.08.20	사외이사	-	이사회
정연훈	1969.08.24	기타비상무이사	계열회사의 임원	이사회
총 3명				

나. 후보자의 주된직업, 약력,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

후보자성명	주된직업	약력	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
오경수	<현>승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	<전>조이먼트 연구원	-
김영철	<현>LSS프라이빗에쿼티 대표이사	<전>지앤플러스 대표이사 <전>농협은행 PE단	-
정연훈	<현>엔에이치엔페이코(주) 대표이사	<전>NHN엔터테인먼트, 글로벌지원그룹 총괄이사 <전>NHN이사	-

□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

가. 후보자의 성명, 생년월일, 추천인, 최대주주와의 관계, 사외이사후보자 여부

후보자성명	생년월일	사외이사 후보자여부	최대주주와의 관계	추천인
오경수	1970.10.17	사외이사	-	이사회
김영철	1975.08.20	사외이사	-	이사회
김지훈	1967.08.24	기타비상무이사	-	이사회
총 3명				

나. 후보자의 주된직업, 약력,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

후보자성명	주된직업	약력	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
오경수	<현>숭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	<전>조이먼트 연구원	-
김영철	<현>LSS프라이빗에쿼티 대표 이사	<전>지앤플러스 대표이사 <전>농협은행 PE단	-
김지훈	<현>스톤브릿지캐피탈 대표이 사	<전>IMM인베스트먼트 대표이 사 <전>IHQ대표이사	-